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스톡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8
----------	-----

2023. 4. 28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안지윤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4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4월 20일

-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지윤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도내 스톡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(안 제2조)
-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·시행 근거 규정(안 제4조)
-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규정(안 제5조)
-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위탁 근거 규정(안 제6조)
-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최근 새로운 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, 2020년 4,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,509건으로 약 3.2배 증가하였으며, 2022년 상반기까지 신고된 건수는 총 1만6,571건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 이상임.
- 도내 스토킹범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8월말까지 도내 112 신고는 309건이 접수되어 법 시행 전인 직전년도 같은 기간 (70건)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, 309건 중 48건을 긴급응급조치¹⁾, 62건을 잠정조치²⁾ 하였음.

1)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,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.

-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, 감금, 협박, 폭행, 상해,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,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,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.
- 이에 충청북도는 증가하고 있는 도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적극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, 「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을 통해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제고해야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,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 - 본 조례는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의상 문제가 없음.
- 안 제4조는 도지사는 매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, 제2항 각호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함.

2) 1~4호로 구분되며, 1호 서면경고, 2호 피해자·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, 3호 전기통신 이용접근금지, 4호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임.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.

- 안 제5조는 스톡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 - 스톡킹 피해지원을 위한 스톡킹 신고체계 구축·운영,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·운영, 스톡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·법률·주거 지원, 스톡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스톡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이라 보여지며, 도내 스톡킹 발생 및 피해 현황 등에 대한 조사·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 안 제6조는 관련 사업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7조는 관련 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- 스톡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안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,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. 또한, 피해자 보호·지원뿐만 아니라 의료·법률·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관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 확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안 제8조는 스톡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스톡킹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스토킹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대두됨에 따라 법무부는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·시행하여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, 여성가족부는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(2023. 1. 17.제정, 2023. 7. 18.시행)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「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 제정을 통해 관련법에 근거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,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, 도내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·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”이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.
2. “피해자”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

제4조(시행계획)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
2. 스토킹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
3.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업)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·운영

2. 스톡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·운영
3. 스톡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·법률·주거 지원
4. 스톡킹 예방교육 및 홍보
5. 스톡킹 실태조사 및 연구
6. 그 밖에 스톡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) ①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톡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·지원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·수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스톡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행위”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.

가.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
나.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(이하 “주거등”이라 한다)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
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(이하 “물건등”이라 한다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

라.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

마.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

2. “스토킹범죄”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피해자”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4. “피해자등”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,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·회복 프로그램 운영
-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 개별화·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 적용

2. 비용 발생 요인

- 피해자에게 단계별 심리지원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
 - 초기 단계(사건 접수) : 심리평가 및 진단, 피해자 위기 상담
 - 본격 단계 : 인지 행동 치료, 가족 상담 등
 - 종료 단계 : 심리평가, 사례 모니터링 등

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- 안 제5조(사업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3년~2027년 (5년간)
- 예산 확보 상황 및 구체적 시행 가능한 사업에 한해 비용 추계 (2023년부터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)
- 향후 관련법 시행 및 사업 확대에 따라 변경 가능

나. 추계 결과 : 114,500천원

-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사업
 - 22,900천원 × 5년 = 114,500천원 * 2023년 예산 기준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 70%, 도비 15%, 시비 15%

